

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삼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71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7. 25.

발 의 자 : 서삼석·강득구·신영대
이병진·채현일·이원택
박수현·문금주·이개호
정을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 수의사는 이 법에 따른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그 취지를 고려할 때 동물병원 내에서 진료가 어려운 가축에 대한 출장 진료 등을 제외하면 일정 시설을 갖춘 동물병원 내 진료가 원칙이라고 할 수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에는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진료업을 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하는 「의료법」과 비교하여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며, 동물병원 외 장소에서 일상화된 진료를 허용하는 경우 응급상황(쇼크, 폐사, 감염) 대응 미비로 동물의료사고 가능성이 높고 의료폐기물 처리 등 위생관리가 어려워 질병 전파 및 공중위생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사고로 부상당한 동물에 대한 응급처치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진료업을 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

동물병원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17조제1항 각 호
신설 등).

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의 제목 “(개설)”을 “(개설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없다”를 “없으며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진료업을 하여야 한다”로 하며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사고 등으로 부상당한 동물의 구조를 위하여 응급처치를 하는 경우
2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
3. 고령 등 반려동물의 신체 특성상 이동이 제한되는 경우
4. 축산 농가에서 사육하는 다음 각 목의 가축에 대하여 진료하는 경우
 - 가. 「축산법」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허가 대상인 가축사육업의 가축
 - 나. 「축산법」 제22조제3항에 따른 등록 대상인 가축사육업의 가축
 - 다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

5.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한 경우나 동물이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
- 제3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1.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그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진료업을 하지 아니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7조(개설) ① 수의사는 이 법에 따른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다.	제17조(개설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없으며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진료업을 하여야 한다.
<신 설>	1. 사고 등으로 부상당한 동물의 구조를 위하여 응급처치를 하는 경우
<신 설>	2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
<신 설>	3. 고령 등 반려동물의 신체 특성상 이동이 제한되는 경우
<신 설>	4. 축산 농가에서 사육하는 다음 각 목의 가축에 대하여 진료하는 경우 가. 「축산법」 제22조제1항 제4호에 따른 허가 대상인 가축사육업의 가축 나. 「축산법」 제22조제3항에 따른 등록 대상인 가축

<u><신 설></u> ② ~ ⑤ (생 략) 제39조(벌칙) ① (생 략)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u><신 설></u> <u>1.2.</u> (생 략)	<u>사육업의 가축</u> <u>다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</u> 5. <u>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한 경우나 동물이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</u> ② ~ ⑤ (현행과 같음) 제39조(벌칙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. 1.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그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진료업을 하지 아니한 자 <u>2.3.</u> (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)
--	--